

# 2015학년도 제2학기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15학년도 제2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
2. 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5. 9. 7.(월) ~ 9.(수)  
나.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실습 이수 기간 : 학기 중 4주 이수  
※ 실습일정은 실습자 및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2016년도 제 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이 2016. 1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기에 자격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늦어도 2015. 12. 31.까지는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평가서를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주 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4. 신청방법 : 개인 또는 학과별로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의 실습허가 승인을 득한 후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서식1>을 기재하여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5. 실습대상 기관 : [부록 1]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단,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함  
※ 도서관에서의 도서출납, 서가 정리와 같은 단순 업무보조 역할 등은 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 반드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부록2]는 현재까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수행한 현장실습기관 현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6. 현장실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 수강생의 근무지(재직기관)에서의 실습  
나.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 형태의 실습  
다. 외국 소재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라.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마.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겸한 중복 실습  
바.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  
(실습 종료 후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8. 실습비 납부 : 실습기관에서 요구 시 개인 부담
9. 신청자 명단 제출 : 학과에서는 수합된 실습신청서와 함께 실습생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10. 기타사항은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32)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1>

## 실 습 신 청 서

### 1. 실습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년/학기
현주소				
전화번호	집 :			휴대폰 :
E-Mail				

### 2. 실습의뢰 내용

실습 기관(부서)	실습기관명 및 실습부서를 기재
실습 분야	
실습 내용	
실습 기간	

### 3. 평생교육 관련과목 이수 현황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관련 교과목 이수내역을 기재)

교과목명	이수시기 (년월)	이수 여부	교과목명	이수시기 (년월)	이수 여부	교과목명	이수시기 (년월)	이수 여부

### 4. 평생교육 관련 경력

구분 (취업, 실습, 봉사)	기관명	기간(년월)	내용
		년 월~ 년 월(총 개월)	
		년 월~ 년 월(총 개월)	

상기 내용으로 귀 기관에 실습을 신청합니다.

실습생 : \_\_\_\_\_ 인

실습지도교수 : \_\_\_\_\_ 인

실습기관장 귀하



<서식3>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7>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실습기관명 :

2. 실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총    시간)

3. 실습지도자 :

직명	성명	담당	내용	비고
(소속부서명 포함 기재)		(담당업무 기재)	(주요업무 상세 기재)	(평생교육사 자격소지 사항 및 평생교육 관련 경력 기재)

4. 실습내용 :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5. 실습상황

실습생 성명	학과명	근무태도 (10%)	자질 (15%)	학습지도 능력 (50%)	연구조사 활동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 리능력 (10%)	총평 (100%)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실습기관의 장

직인

# [부록 1] 평생교육기관 유형

구분	기관유형		예 시	
평생교육기관	①유형	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14..1 기준)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정받은 기관)	
	②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 · 지정 기관('11년 지정 시작)	
	③유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④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 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⑤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등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령	⑥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⑦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⑧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⑨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 [부록 2]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현황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대구 지역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139번지	620-2293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977-2	636-5567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01	350-0831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대구시 북구 산격2동 120번지	383-1300
	대구여성인력개발원	대구시 남구 대명2동 2007-8	472-2281
	대구동부여성문화회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664-21	951-0185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산37-5번지	634-8684
	선린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477-1	323-2298
	신암평생교육원	대구시 동구 신암3동 220-20	955-7755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공원길 54	740-5532
	대구홍사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222-8	754-3415
	대구YMCA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6	255-0218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42	420-2700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977-2	636-5567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86-1 세진빌딩 6층	953-9460
	지오문화센터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79 삼영메디빌 3층 303호	585-0094
	중앙직업개발 평생교육원	대구시 동구 방촌동 883-5번지	961-4466
울산 지역	울산동부도서관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403	052-236-0466
경북 지역	경산YMCA	경북 경산시 사정동 3-17	816-5992
	경산문화원	경북 경산시 서상동 143-18	815-0593
	경산대안교육센터	경북 경산시 중방동 859-5번지 2층	816-6059
	경상북도립 영천금호공공도서관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리 187번지	054-335-2124
	가톨릭상지대학평생교육원	경북 안동시 상지길 15	054-851-3071~3
	구미시평생교육원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17	054-463-4757
	구미 YMCA	경북 구미시 송정동 54-15	054-452-2321
	구미시립도서관	경북 구미시 형곡동 142	054-455-5073~4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850-5653
	대구미래대학평생교육원	경북 경산시 평산동 270번지	810-9226
	야사종합사회복지관	경북 영천시 야사동 120번지 주공4단지내	054-332-8418
	포항YMCA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810-5	054-246-1711
	포항YWCA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동동 127-2 일선빌딩6층	054-274-4444
	경남 지역	마산YMCA	경남 마산시 양덕2동 526-12번지
창원YMCA		경남 창원시 도계동886-4	055-266-8680
창원시립도서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로 50번지	055-225-353
서울 지역	서울종로YMCA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	02-732-8291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대구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재학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실습과목(이하 '실습과목'이라 한다) 및 현장실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습 선수과목)** 실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4개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기관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선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실습)** ①현장실습은 실습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수강생은 수업 및 현장실습 기간을 감안하여 학기 개시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나를 이수한 후에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실습기관)** ①현장실습은 반드시 평생교육법 및 타 법령에 따라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습지도교수는 실습기관 선정 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양질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수강생은 현장실습에 앞서 실습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 후 별표의 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은 접수된 신청서를 수합하여 선정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의뢰한다.

**제5조(현장실습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수강생의 근무지(재직기관)에서의 실습
2.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 형태의 실습
3. 외국 소재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4.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겸한 중복 실습

**제6조(증빙자료의 보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자문서화 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다만 현장실습수행 증빙자료는 수강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이전까지 원본으로 5년간 보관한다.

1. 실습과목 운영 관련 증빙자료: 오리엔테이션·실습세미나·실습평가회 수업운영자료(운영규정, 출석부 등), 현장실습 방문지도 확인서
2. 실습의뢰 관련 증빙자료: 협약서(또는 공문, 실습의뢰서 등 협약관련서류),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
3. 현장실습수행 증빙자료: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일지,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제7조(준용)** 실습과목 담당교수 및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실습지도, 실습평가 성적 반영 등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지침과 평생교육법 및 동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